

# - 정비사업 e-조합시스템 -

## 시스템 수정절차 정리

〈19.10.22. 작성〉

e-조합시스템 운용 중 시스템 수정사항의 절차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업무에 참고하고자 함.

### □ 수정요청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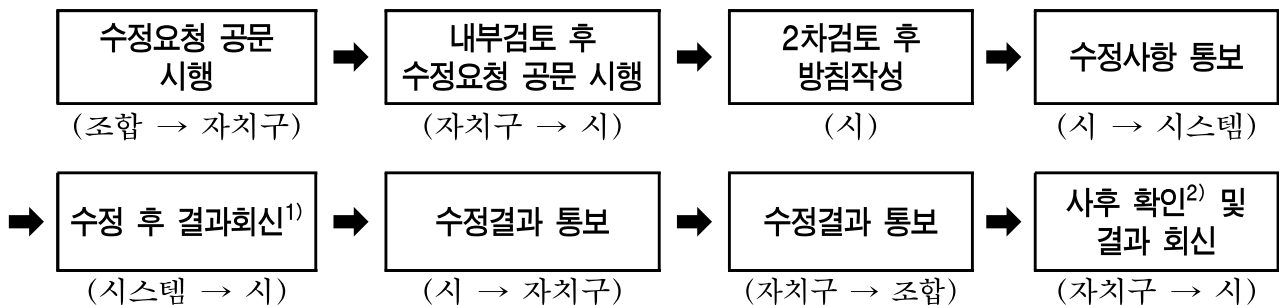
1. 예산 수정
2. 결재문서 수정
  - 2-1. 일반 결재문서
  - 2-2. 주민등록번호 공개 시
3. 사업 중단에 따른 홈페이지 폐쇄

## 1. 예산 수정

### ○ 업무개요

- 수정근거 : 예산은 확정 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사항으로, 수정 필요 시 시스템을 통한 수정조치가 불가피함
- 핵심절차 : 예산은 경우 모든 회계와 연계되므로 단순 비노출 처리방식이 곤란하여 기존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
- 실행방법 : 해당 예산을 최종결재 이전으로 데이터 수정하여 예산 변경 가능토록 조치

### ○ 수정절차



### ※ 수정자료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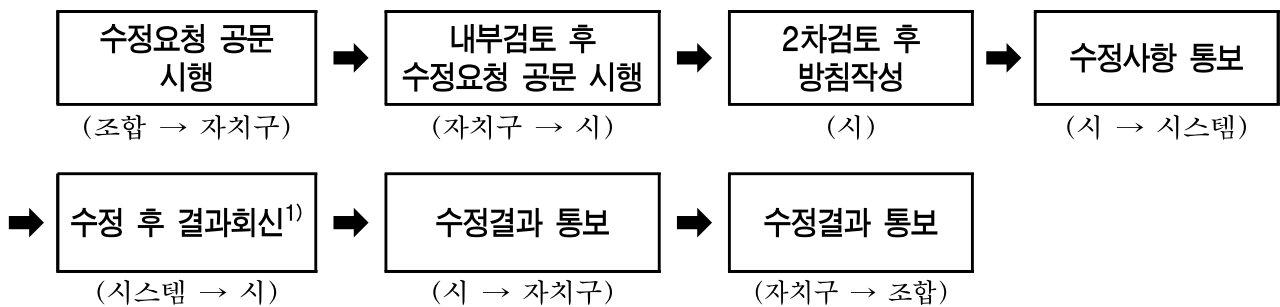
- 1) 수정 후 결과회신 : 예산은 데이터 수정 시 자료가 삭제되므로 시스템에서 수정 이전 기존 자료를 별도 보관
- 2) 사후 확인 : 결재이전으로 데이터 수정 시 수정요청 건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수정 가능하므로 사후 확인 필요(자치구 확인사항)

## 2. 결재문서 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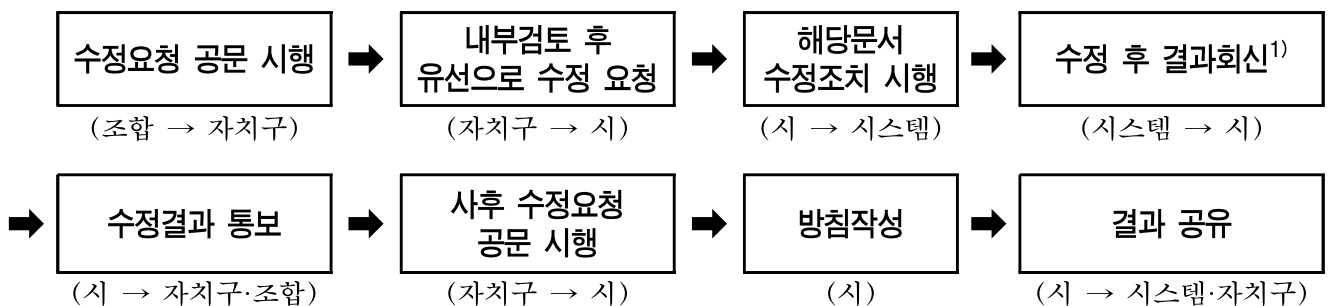
### ○ 업무개요

- 수정근거 : 개인정보 등 수정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조치  
ex) 도정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비공개
- 핵심절차
  - 1) 회계문서(전표 등) : 회계문서의 경우 회계장부와 연계되어있어 삭제가 곤란하여, 결재이전으로 데이터 수정 조치
  - 2) 일반 결재문서 : 요청에 따라 해당문서 삭제 후 조합에서 재 기안토록 조치
- 주의사항 : 해당 결재문서 삭제는 완전(영구)삭제가 아닌 시스템 상 비노출 처리 방식으로, 이는 향후 수사 등 자료조회 필요 시 근거를 남기기 위함.

### ○ 수정절차(일반 결재문서)



### ○ 수정절차(주민등록번호 공개 시) - 선 조치 방안



### ※ 수정자료 관리

- 1) 수정 후 결과회신 : 회계문서는 데이터 수정 시 자료가 삭제되므로 시스템에서 수정 이전기존 자료를 별도 보관

### 3. 사업 중단에 따른 홈페이지 폐쇄

#### ○ 추진배경

- 「서울시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」 운영 지침 제10조(홈페이지의 폐쇄)에서 사업종료(조합해산 등)에 따른 홈페이지 폐쇄는 규정하고 있으나, 사업 중단(시행자방식 변경 등)에 따른 홈페이지 폐쇄 근거가 없음.

#### ○ 개선방안

##### 1. 사업종료에 따른 홈페이지의 폐쇄 : 기존 규정 적용

제4조(사용기간)	추진위원회(공공지원자 조합직접설립) 승인(인가)일부터 청산법인의 해산일까지
제10조(홈페이지의 폐쇄)	① 제4조에 의한 <u>사용기간 만료된 날부터 1년 후</u> 폐쇄 ② 홈페이지 폐쇄 시 폐쇄사유 및 공지구체 안내

##### 2. 사업 중단에 따른 홈페이지 폐쇄

가. 자치구 요청에 따라 즉시 폐쇄

나. 홈페이지 폐쇄 시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폐쇄사유 및 공지구체 (자치구명, 부서명, 담당자명, 연락처) 안내

#### ○ 폐쇄 후 관리

- 홈페이지 폐쇄는 영구 삭제가 아닌 시민(조합원)에 비노출 처리 방식으로 향후 정보공개 및 수사 등에 따른 조회 필요 시 홈페이지 복원 가능